노인가장세대 지원

담 당	노인복지담당
담당자	장명운(4866)

□ 사업목적

- O 소외계층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노인가장세대 소외감 해소
- O 월동용 의류 및 냉·난방경비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

__ 근거법령

O 노인복지법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 사업개요

- O 사업기간: 2021년(1997년부터 계속)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장세대
- 사업량: 18,631세대 ※재원비율: 도30%, 시70%
- O 사업비: 1,676,790천원(도비 503,037 시군비 1,173,753)
 - 산출기초 : 90,000원 × 18,631세대 = 1,676,790천원
- O 지급금액: 세대당 냉방비 3만원 및 난방비 6만원
- O 사업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 3만원과

난방비 6만원 혹은 그에 상당하는 냉난방용품 지원

□ 업무추진흐름도

○ 지원 대상자 선정(시·군) → 지원물품 파악 및 구입(온풍기, 전기담요, 유류비 등) → 사업시행(계좌입금 또는 물품구입 지원) → 사업정산

__ 추진실적

(단위: 세대)

																(- 11 + 11 11,			
구분	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2019년	17,177	2,300	719	900	900	2,100	1,000	900	798	722	720	719	1,000	800	800	719	730	820	530
2020년	18,761	2500	750	1,050	900	2,100	1,000	900	2,000	722	720	719	1,000	800	850	720	700	820	510
2021년 사업량	18,631	2500	750	1,050	900	2,200	1,000	900	2,000	722	720	719	900	800	850	720	730	820	350